

제10회 노동권익포럼 자료집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8월 29일 (화) 16:00 ~ 18:00

장소 : 서울노동권익센터 9층 교육실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노동권익센터

제10회(17년 제3차) 노동권익포럼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제10회 노동권익포럼 주제선정의 배경과 경과>

- 지역공동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고용, 복지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기업복지에 편중된 노동시장의 분단과 동시에 생산공간인 사업장과 일상을 영위하는 재생산공간인 지역공동체도 서로 분단되어 있음.
-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차별적인 근로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실시.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로 규정.
- 그런데 노동부의 정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서만 작동. 다른 부문의 정책이 일반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전달체계를 갖는 것에 비하면 별도의 전달 체계를 갖고 있음.
- 2017년 서울시는 자치구단위 노동복지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를 확대해 9개소까지 개소. 이런 환경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기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지방정부 노동단체 발전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복지상담사업 연구세미나팀을 구성하여 8차례 연구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노동복지상담 활동은 노동복지의 기본 체계와 논점을 이해하고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길잡이 역할. 즉, 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과 연계-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복지 욕구를 구현하고 후속 관계를 통해 조직화(주체 형성)로 발전 전망을 찾고자 함.
-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8년 노동복지상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조직하고자 함.

※ 첨부: 노동복지상담사업 8회차 종합정리 자료

프로그램 안내

사회 :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간	주요 내용
16:00~16:10 (10분)	개회 및 인사말씀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6:10~16:30 (20분)	발제 :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6:30~17:30 (60분)	토론① :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② :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토론③ : 위기 상황의 복지급여 지원 제도 신성희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 1팀장) 토론④ : 노동자 복지와 지역노동센터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
17:30~18:00 (30분)	청중 토론, 질의/응답
18:00	폐회

▷▷자료집 목차◁◁

제 목	쪽
▶ 노동복지상담 연구세미나팀 활동 경과	1
▶ 발제: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문종찬)	5
▶ 토론①: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의 복지(오건호)	25
▶ 토론②: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노동복지센터(안성식)	31
▶ 토론③: 위기 상황의 복지급여 지원 제도(신성희)	37
▶ 토론④: 노동자 복지와 지역노동센터(박재철)	41
▶ 참고: 노동복지상담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안내	55

▷▷노동복지상담 연구 세미나팀 활동 경과◁◁

- ▶ **주 관:**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 서울노동권익센터
- ▶ **참여자:** 문종찬, 최정기, 고명우(이상 서울노동권익센터), 공군자(서울노동광장), 김은선(희망씨), 한지현(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태영(구로근로자복지센터),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 양지윤(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변정윤,곽세영(이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차시	날짜	주 제	발제
1	4.19(수)	노동과 복지제도의 이해	오건호
2	4.28(금)	복지전달체계와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	하경환
3	5.12(금)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경험과 사례	이 철
4	5.19(금)	지역사회 복지론	한덕연
5	6.2(금)	중간토론: 노동복지상담의 의미와 위상	참여자
6	6.9(금)	노동복지상담 세부영역 검토-노동복지상담 프로그램 기획	오건호
7	6.23(금)	노동복지상담 세부영역 검토-지자체복지정책의 이해	한석구
8	6.30(금)	노동복지상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까?	문종찬

발 제 문

노동복지상담 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1)

2017. 8. 21

문중찬(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들어가며

- 사례1: 대리운전기사 A씨는 부채를 많이 지고 있어 신용거래와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동노동자센터의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일부 면책 및 개인회생으로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이 가능해짐. 또 주거복지상담을 통해 A씨의 조건에 맞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됨.(이동노동자 센터)
- 사례2: 건물 청소를 하는 B씨는 건물주가 그만나오라는 말에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함. 사실인즉 워낙 연로하고 관절염이 심해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할머니를 건물주인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과 무관하게 용돈을 드리는 형편으로 판단함. 부양의무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격을 받지 못함. B씨는 살던 월세방에서 마저 쫓겨나게 됨. 수소문 끝에 허름한 반지하방을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역사회에서 모금을 해서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의 정기적인 후원도 조직함. 지역사회의 노인돌봄단체와 연계하여 일상적인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관절염이 심해 이용할 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지원을 함.(동부비정규센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라면 이미 이러한 사례와 경험은 적지 않은 일이다. 비단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 혹은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들의 질문은 근로기준법에 국한하지 않는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문제, 세금문제와 연말정산,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부의 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적잖이 당황하게 한다. 그뿐인가 개인회생과 파산 등 금융문제, 재개발과 임대아파트, 자녀의 학교 문제 같은 질문까지….

게다가 이런 질문 끝에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 있으니… ‘혹시 그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없어요?’

1) 이 글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노동복지상담 연구세미나’를 정리하여 2018년 노동복지상담사업 제안서로 작성한 것임.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보세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 센터(단체)는 그런 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라고 자를 수 있나? 노동단체와 활동가라면 이런 현장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 ▶ 정보 - “그 문제는 이런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다.”
- ▶ 연계 - “그 문제라면 우리 구에 000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전문이에요.(혹은 주민센터에 000선생님이 전문이에요.) 제가 연락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 ▶ 조직 - “요즘 비슷한 문의가 많네요. 그분들 모아서 노동복지교실 열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1. 정부의 근로복지정책 흐름과 노동시장의 변화²⁾

(1) 근로복지정책의 시기별 구분

노동부가 2006년 발간한 노동행정사 제3편 제5장 근로복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정책의 발달을 시기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광복 후부터 1980년까지 노동관계법의 제정, 기본적 근로조건의 확립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등 근로복지제도의 태동기
-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복지서비스관련 법령 제정 및 근로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실시 된, 근로복지의 기본체계 구축기
-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자종합복지대책 수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기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및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기로 구분하였다.

(2) 우리나라 노동복지정책의 흐름과 기초

① 초기 산업화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조치에도 미흡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비교적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실효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2) 이 부분은 ‘지방정부의 노동복지정책 확충 모색’(2014.6.22. 문종찬)을 보완함.

60년이 지난 지금, 노동관계법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법이 최소한의 개념이 아니라, 최저수준만 지키면 더 이상의 근로조건개선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사자의 교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근로조건개선 즉 기업복지는 노동조합 불온화 정책으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요구가 불법화 되는 경향마저 띠고 있다.

② 노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미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대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시기는 정부의 근로복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차별적인 근로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노동부의 정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서만 작동을 한다. 다른 부문의 정책이 일반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전달체계를 갖는 것에 비하면 노동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턱이 높은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을 통해서 정보의 전달과 복지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급증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③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복지정책?

정부는 1991년 근로자복지대책 수립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는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노조활동의 활성화를 계기로 폭발적인 노사분규로 표출되었다. … … 우리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고 어려워지자 과격한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이 국민경제와 노사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1년 3월 19일 개최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에서 정부는 물가 및 근로자주거안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협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산업평화와 근로의욕 진작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하락, 불안정한 일자리 급증, 실질적 복지 미흡이라는 결과로 볼 때, 조직된 노동에 대한 통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④ 노동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의 독립적 구조 불가

노동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991년 3월 19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지시에 의거

노동부는 근로기준국장을 중심으로 추진팀을 구성하고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을 선정 근로복지확대를 위한 제반 노동복지정책을 점검하였다. 근로자의 복지확충을 위해 기존의 기업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복지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의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결과 노동부 고유사업에 관한 정책보다는 타부처에서 정책개선을 통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많았다. 근로자주거안정대책, 근로자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한 노동은행 설립,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기업내 사내대학운영의 활성화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대책 수립이 어려울 정도였다.”

물론 이 당시엔 대통령의 의지로 부처간 조율이 어렵사리 이뤄지기는 했다.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생략하되, 결국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나는 노동부의 노동복지정책이 시설 건립이나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처간 협조와 조율로 생산된 정책의 전달체계가 지자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⑤ 노동시장의 변화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서 산업간 편차가 심하다. [그림1]³⁾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반면 나머지 산업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탄력성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는데(2000년~2008년 OECD 국가 중 23위)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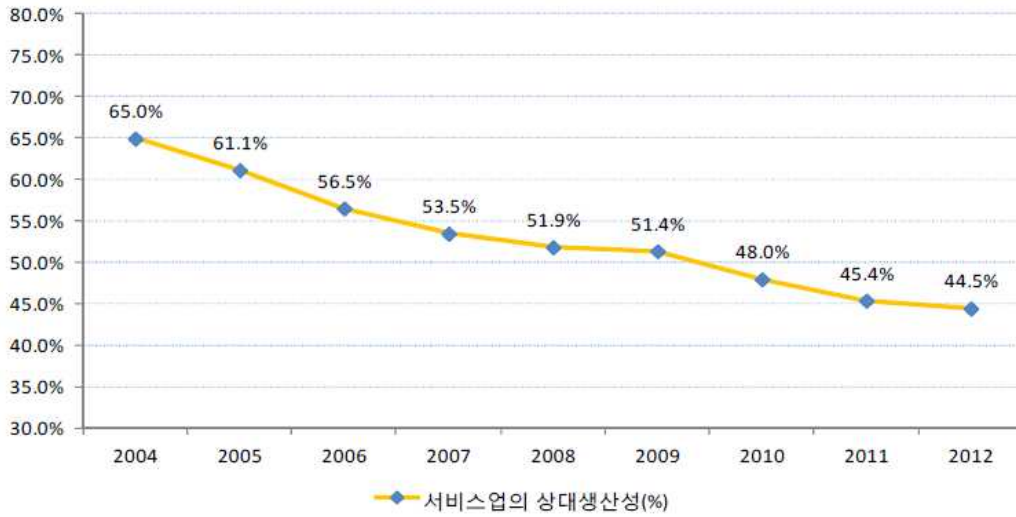
종래의 노동복지정책이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보호와 기업의 직접 임금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상과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1] 주요산업의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백만 원)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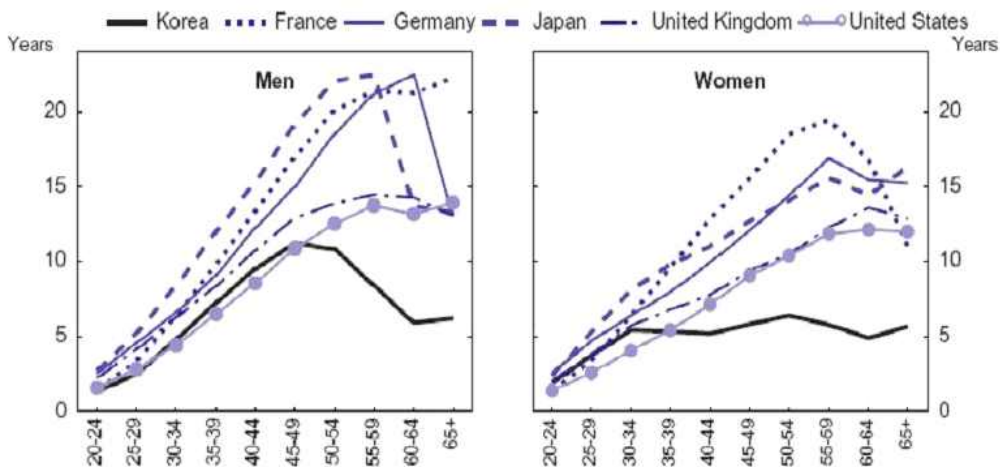


3) [그림1]~[그림3] 한국노동시장의 갈등과 완화 방안(2014. 4.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그림4] 제4차 근로복지기본계획(2017.2.)에서 인용

[그림2] 근로자 1인당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 추이



[그림3]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 10인 이상 정규근로자



[그림4]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격차 확대·지속

▶ 연도별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 (단위: 천원)

항목	'12	'13	'14	'15
전규모	201.8	212.2	207.7	209.6
300인 미만(A)	163.0	152.6	141.7	144.5
300인 이상(B)	250.5	286.7	290.6	296.3
비율(A/B×100)	65.1%	53.2%	48.8%	48.8%

* '15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을 100이라 할 때, 3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

연도	비율 (%)
2012년	65.1
2013년	53.2
2014년	48.8
2015년	48.8

2. 정부의 노동복지(근로복지)정책 개념과 구분

(1) 노동복지(근로복지) 개념

-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말한다.⁴⁾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는 임금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며,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광의의 개념 - 근로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또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활동
- 협의의 개념 -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적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정책이나 활동

(2) 제공 주체에 따른 구분

- 공공근로복지 : 근로복지의 제공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광범위하게 보자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지급을 강제하는 형태를 띠는 제반 급여와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각종 근로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기업복지 : 기업이 제공주체가 되어 당해 기업 내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임금이외의 복지적 개입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 법률을 통해 기업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한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 자주복지 : 노동조합이나 자치회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며 구판장 설치, 대부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5] 노동복지 제공주체에 따른 구분



4) 노동행정사 제3편 5장 근로복지(2006, 노동부)

3. 노동복지사업으로 보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노동복지상담사업

- 지금까지 우리 논의에 기초해서 본다면, ‘노동복지상담사’ 보다는 ‘노동복지상담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음. 즉 개인의 역할이 아닌 기관(단체)의 역할이란 측면을 우선적으로 봐야 함.
- 노동법률 상담에서도 초기 민간단체의 역할이 높았으나, 권리구제지원과 같은 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제공 수준으로 확장이 되면서는 제도와 전달체계 내에 있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커짐. 즉 노동복지상담사업도 초기에는 민간단체도 얼마든지 역할(상담, 지역자원연계 등)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민간단체의 역할보다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노동복지센터의 노동복지사업은 건강교실, 문화교실을 주로 하여 일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향후엔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필요한 내담자를 복지전달체계로 안내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세미나 2장 ‘찾동의 사례관리’를 이야기 할 때,

▶ ‘찾동’ 서비스 과정에서 노동 상담이나 일자리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게 바로 사례관리 개념이다. 가면 그분이 가진 문제는 한국사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곳에 다 배분한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문제가 어떻게 자료화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표 1] 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개념의 노동복지센터

노동법 상담	권리구제지원	사적조정	노동복지상담
전화, 내방, 온라인 상담	법률대리(진정 등)	사업장개입 (권고, 조정 등)	법률구제지원 이외에 각종 고충지원
노동법률 상담자	위촉 권리보호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마을노무사, 노동옴부즈만 (市, 區, 노동 지청)	노동복지센터 (구청, 유관기관)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지원 사업 영역 노동법률담당자(공인노무사 등)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영역 (유관기관 협력, 조직활동가)	

(2)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책 방향⁵⁾

-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상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 노사협력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 ▷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 노동포럼 등
 - ▷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
 -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 인문학 등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 인근 타 시설(복지센터 등)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3)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문화복지사업’⁶⁾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센터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실적 및 ‘문화복지사업’으로 편성한 세부사업 및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한편, 대표적인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78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참고하여 볼 필요가 있어 첨부하였다.⁷⁾

5)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2017, 서울특별시)

6)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2016.2.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표 2] 센터별 세부실적

구분	주요사업명	A센터	B센터	C센터	D센터
인원(명)	49,127	7,897	9,120	11,660	20,45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상담, 법률지원	1,309	1,752	578	1,934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등	1,818	2,644	5,183	6,645
문화사업	인문학 강좌 등	860	2,232	2,637	1,149
복지사업	감정노동치유강좌 등	3,765	2,001	1,693	9,851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	취약노동자 컴퓨터활용 교육 등	83	272	1,569	871
기타	조사연구사업의 토론회, 워크숍 등	62	219	-	-

[표 3] 센터별 문화복지분야 세부사업 및 예산

센터별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A센터	문화사업	문화 복지강좌	퇴근후 문화여가생활 지원 (문화기행 등)	6,700
		일터문화제'뜨락'	사업장 밀집지역으로 찾아가서 문화행사 진행	9,840
		노동인권영화제	영화 상영회, 문화 공연 등	10,100
	복지사업	감정노동 심리정서지원사업	노동자의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심리치유,명상,스트레칭)	12,600
		기초 노동복지캠페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노동복지의제확산을 위한 캠페인	13,700
B센터	문화사업	청년 노동자 아카데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문사회교양 교육	7,410
		노동자 문화역사 탐방	노동역사 문화유적지 탐방	8,250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진행	25,750
		감정노동자 문화강좌	POP,서예 등 문화강좌 진행	7,800
	복지사업	노동자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	전문가를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운동처방과 식생활처방	11,175
		노동자 몸건강 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실 운영	2,514
		노동자 북카페	도서대여, 근로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활용	8,960
		노동인지 현장체험	농촌 체험 및	4,755

7)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2013.1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프로그램	지역 생산자 협동조합 견학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지원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학습 멘토링 연계	6,313
C센터	문화 사업	문화 강좌	통기타, DIY 목공강좌	21,296
		인문학 강좌	노동, 역사, 경제 등 시기에 맞는 특강 진행	4,048
		노동문화제	영화 상영회, 문화 공연 등	6,034
		역사기행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	3,314
	복지 사업	노동자 건강지킴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교실 / 심리치유 프로그램	8,508
		맞벌이 노동자 자녀 교육 강좌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 바람직한 의사소통법 등 강좌 진행	2,924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하는 가족체험 행사	가족캠프,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학습기회 제공	8,735
		작은 도서관	1,000여권의 서적비치 및 글쓰기 강좌	14,135
D센터	문화 사업	인문학 강좌	노동, 역사, 글쓰기 등 시기에 맞는 특강 진행	8,340
		문화 강좌	목공, 오카리나, 기타 등 강좌진행	10,700
	복지 사업	심리치유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5,210
		산업재해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위한 스트레칭교실, 고령노동자 질병예방교육	9,600
		비정규노동자 자녀지원	저소득층 노동자자녀 학습지원	7,950
		노동자 쉼터운영	시민, 노동자의 휴게공간 제공	3,550

[표 4] 복지관의 중점사업과 활성화 사업의 비교

(단위: 개소, %)

구분	중점 1순위		활성화 1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촉진	6	10.7	4	7.1
직업훈련	6	10.7	7	12.5
취미교양	14	25.0	10	17.9
생활편익시설	4	7.1	6	10.7
법률상담	2	3.6	1	1.8
생활체육	8	14.3	12	21.4
아동청소년복지	0	.0	1	1.8
외국인근로자지원	0	.0	1	1.8
임대사업	6	10.7	5	8.9
무응답	10	16.1	9	16.1
합계	56	100.0	56	100.0

(4)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노동복지사업

- 노동복지센터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둔 근로복지시설이지만 市의 운영방향은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직접서비스 제공에서 (노동)복지정책으로 안내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취약노동자를 현장에서 대면하여 노동복지상담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전개할 수 있는 노동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1차 기관으로서 역할도 가능할 것임.
- 이와 관련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⁸⁾

서울시 노동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집단은 취약근로자이다. 취약근로자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동권 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취약근로자는 노동권익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취·창업에서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서울시가 취약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노동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기반 노동복지센터와 민간 노동복지시설은 취약근로자 그리고 취약근로자가 일하는 영세사업주와 지역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지역기반 노동복지시설이 지역의 취약근로자 동향과 욕구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접하고 있어, 상향식 노동복지사업의 1차 거점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복지에 관여하는 두 축인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동조합이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향식의 사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서울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상향식으로 노동복지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면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취약근로자 지원사업 기획과 발굴이 용이하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나 입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중략…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전초기지이다.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노동사업 발굴과 기획을 해야 한다. 사업 수행은 가능한 관련된 지역시설들과 공동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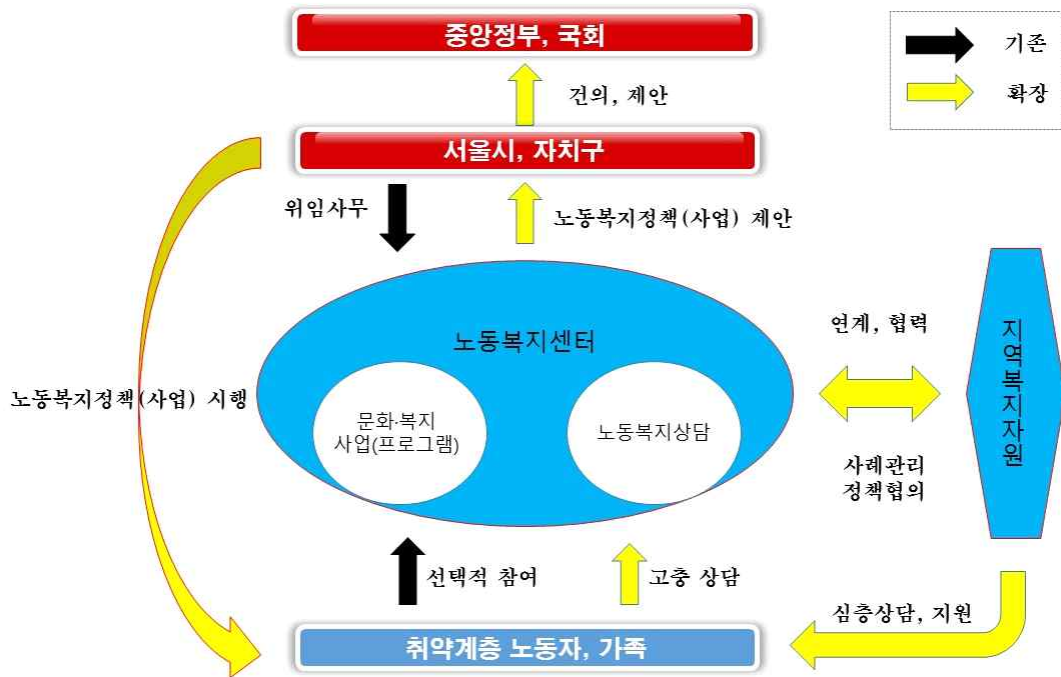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은 올해 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에는 ‘노동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립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는 ‘노동복지서비스제공’에서 ‘노동복지상담사업’으로 영역을

8)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역할제고와 운영방안”(2014.12. 신경희, 서울연구원)

확장하는 개념과 그에 따른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지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다룬다.

○ 이상과 같은 개괄적 개념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6] 노동복지상담사업으로 보는 노동복지센터



4. 노동복지상담 세미나팀의 고민

(1) 노동복지의 개념

① 시장외적 급여와 서비스의 확대=사회임금 인상

- 노동자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또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활동
 -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활동이 임금인상으로 축소·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
 -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제공되는 정부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는 수급권자
 - 노동복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일을 할 의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 부분 또한 노동복지 영역이다.
 - 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복지상담 사업의 영역에 일자리 알선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영역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영역에서도 ‘기업에서 찾는 인적자원 개발’ 이 아닌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로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 노동자와 그 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임금’ 으로 ‘시장’ 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사회적’ 부분이 늘어나야 한다.

② 사회임금 영역의 개념도⁹⁾

[그림 7] 자본주의 가계재생산 :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 사회임금 확대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

-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폭 넓은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통합적 노동계급의 형성
-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욕구로 모아지는 정치세력화

③ 사업장내 근로조건과 노동복지=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복지는 ‘임금 등 근로조건’ 은 제외

○ 그러나 복지 제공주체에 따른 구분으로서 공공근로복지는 “근로복지의 제공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광범위하게 보자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지급을 강제하는 형태를 띠는 제반 급여와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

9) 노동복지상담 연구 세미나 1강-‘노동과 복지제도의 이해’(2017. 4. 19. 오건호)

험 및 각종 근로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 공공근로복지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복지 개념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제외될 수 없다.
- 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2) 이해관계 실현에서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비교

- 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개념을 상정했을 때, 노동권익과 노동복지의 실현 경로는 동일하지 않을 것임.
- 이는 조직노동의 경우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실현 경로가 다른 점과 비교 해 불만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임.

[표 5] 이해관계 실현에서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비교

	권리분쟁	이익분쟁
조직노동	유권해석, 고소·소송	단체행동(쟁의·파업 등)
비조직노동	노동권익보호(노동법률상담)	생활상담(노동복지상담)
	권리구제지원사업 (노동권리보호관)	복지정책 정보제공과 교육 (노동복지상담사)
	진정, 소송	여론, 선거

(3) 노동복지의제 사업, 상담사업, 상담사 양성사업?

- 기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안내는 기본적으로 상담사업의 영역에서 출발.(현 단계에서 선 불리 노동복지의제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
- 노동단체가 이와 같은 영역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담을 위한 교육이 우선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담사 양성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노동복지상담 수준이 완결적인 상담이 어렵고 시범사업이라는 면에서는 아직은 ‘상담사’를 부여하기엔 부족함이 있음.
- 노동복지상담 교육을 이수하는 활동가는 노동복지정책과 제도의 이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 노동권익보호사업과 연동한 시범 상담사업, 지역사회 홍보·교육사업 기획 분야에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4)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조직화, 그리고 노동조합

- 한비네 워크숍에서 ‘상담을 조직화로’에 관한 토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담이 안에서 그치게 되면 조직화는 되지 않는다.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조직화의 과정이다.」
-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면 노동조합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마저도 ‘여지’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물며 ‘노동복지상담’을 (노조)조직화의 유력한 경로로 여기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노조 조직을 제고는 독자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다.(혼란을 피하기 위해 노조 조직화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등의 표현도 아예 생략키로 한다.)
- 지금 우리에게 ‘노동복지상담사업’은 제도나 정책 개선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나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기존의 제도 속에서 찾는 것임. 이러한 1단계 사업에서 ‘주체형성’과 같은 조직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작은 사업장 노동자나 불안정 고용형태의 주민(노동자)들에게서 “힘들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마음 상하지 말고, 먼저 ‘노동복지센터’에 가봐!”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자.-이 경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 기성 노동조합이 ‘복지’라는 카테고리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을 때,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땅치 않다. 앞서 ‘사례관리’라는 부분에서 노동상담 영역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을까? 그마저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작은사업장(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간부들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우선은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어찌면 ‘노동복지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짬을 내어 지역의 복지자원과 관계 맺기를 하고 상담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

(5) 서울에서 찾동, 마을사업과 관계는?

- 우리가 만나는 작은사업장, 불안정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찾동’(-지자체 일반복지영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노동복지상담사업이 마을사업(계획)과 당장의 연계를 맺는 것은 우리 사업의 필요조건도 아니거니와 효과에도 의문임.
- ‘마을 사업에 노동의제가 없다’는 문제의식은 현재 찾동+마을계획에서는 긴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노동의제 중요하지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을계획의 핵심은 취약계층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 없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다.”
- 마을계획에 노동의제를 엮을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노동자들과 함께 마을노동의제를 만들어야 할 문제
- ‘관계복지’ 라는 개념도 등장했듯이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관계의 발전을 계획
 - 기관과 기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노동자와 우리 단체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포함한 개념

(6) 지역은?

- 우선 행정단위를 고려함. 주체형성의 과정에 노동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안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우리 임의의 혹은 편의의 조직화 구획이 아니라 자원 활용의 편의성 때문임.)
- 자원동원 : 위기에 빠진 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지원하는 데는 지역사회의 자원동원이 우선적임.(지역사회와 우리 단체가 연계-관계를 맺는 단위로서 유의미)
- 접근성 : 현재 자치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 대부분의 노동상담이 해당구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소재지임. 동선-소생활권문제는 과제로 남기더라도 지역은 노동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
- 커뮤니티 : 3명이라도 모임을 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공간 접근성과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하는데 지역은 가장 원초적인 조건을 제공함.

5. 1단계 노동복지상담 사업의 영역(교육내용)

(1) 사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존 노동법률 상담 영역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체계 : 보험료, 급여, 크레딧, 두루누리, 미래 전망(기금 소진)
 - 두루누리사업 : 보험료 지원 신청
 - 출산크레딧 : 출산, 실업크레딧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 가입 효과 문의 (추납, 반납 등)
 - 여러 급여 형태 : 유족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재직자연금, 분할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체계 : 보험료, 급여, 수가, 의료기관(공급체계)
- 최대 문의는 보험료 부과체계 : 직역 전환에 따른 보험료 변화, 피부양자 여부 등
- 민간의료보험 가입 효과 문의
- 보건소 복지 : 검진, 의료비 지원 등

(2) 정부복지

- 정부의 복지서비스 통합정보 제공 양호 : 보건복지부 ‘[복지가이드북]. 생계, 의료, 육아, 노년, 장애 등 주제별로 잘 정리돼 있음.
- 제도가 무척 복잡. 대부분 소득, 자격 조사 시행. 복지로, 단행본 안내서 존재.

(3) 금융

- 일반 대출, 금융위기 대응 방안.
-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중.(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이동노동상담 상담 진행 중)

(4) 주거

-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취약주거 지원 등.
- 현재 서울시 위탁 형태로 10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중

6. 1단계 노동복지상담 사업 계획

노동복지상담 활동은 노동복지의 기본 체계와 논점을 이해하고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길잡이 역할. 즉, 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과 연계-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복지 욕구를 구현하고 후속 관계를 통해 조직화(주체 형성)로 발전.¹⁰⁾

(1) 노동복지상담 역량 기초교육

- 총 15강(방문견학 1강, 수료MT 1강 포함)
- 1일 3강(×평균 2시간) 총 5일

10) 세미나 6강-“노동복지상담 세부영역 검토-노동복지상담 프로그램 기획”(2017.6.9. 오건호)

○ 11월 6일 주간 시행(가안)

(2) 18년 시범사업(홍보)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통 필수 사업(민간단체는 신청)
 - 현재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논의 중임.
-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지원 통합 서비스사업에 따라서 통합 홍보 기획
 -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과 사업 홍보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 노동복지 대중 강좌 개설
 - 본 사업의 홍보 일환으로 검토,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검토

(3) 지역자원 조사와 업무협약 추진

- 구(區) 차원의 복지자원 조사 및 노동복지상담사업의 취지 설명과 간담회
- 업무협약 추진
- 시범사업이기에 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나 적정한 연계단위가 없을 경우엔 광역 단위 등 협조체계 구축

(4) 상담매뉴얼, 사례관리 매뉴얼

-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기록양식 통일, 수합
- 사례관리 - 2차 기관으로 연계 했을 지라도 기초적인 관리를 위한 공통 양식 마련, 시범 사업 후 평가와 제도화 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내담자 안내와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리한 공통 매뉴얼 제작

(5) 기타

- 이상과 같은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체계가 필요함. 현재로선 외부전문가 자문과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안 강구
- 18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후, 평가회의를 거쳐 공청회 개최(8월 경)

목 차 문

[토론문]

불안정·저임금노동자의 복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그만큼 노동자의 생활에 복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계소득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복지가 더욱 중요하다.

노동복지는 노동자와 관련된 복지를 총괄해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노동복지는 크게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복지를 제공받으면 ‘기업복지’,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적복지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복지의 한계

기업복지는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이다. 기업복지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금융부문, 공공부문 등에서 운영되고, 정규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는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한 기업복지를 누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자 내부에 존재하는 기업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중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는 공적복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가 구현되면 굳이 기업복지에서 의료비 지원 항목이 불필요하다. 대신 노사가 소득에 비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노동자가 의료비 혜택을 얻으면 노동자의 의료복지 격차를 해소하면서 사회연대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는 기업복지로 제공되는 교육비 지원, 주거 마련 지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공적복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복지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적복지이다. 공적복지는 복지제도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표 1> 복지제도의 유형별 특징

	제도	대상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한부모복지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취업자
사회서비스/사회수당	학교급식,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혹은 전체계층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공공부조 복지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복지이다. 공공부조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소득, 자산 등의 경제능력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중앙정부가 정하는 복지도 있고,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장수수당,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월동난방비 지원 등의 복지도 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다. 노동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복지를 제공받는다.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2/3을 차지할만큼 핵심 영역이고 이후 더 비중이 커질 예정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를 위한 핵심 복지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 복지이다.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사회서비스, 현금을 지급하면 사회수당으로 불린다. 보통 노동시장 밖 연령의 사람들, 즉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이다. 우리나라 복지 논쟁을 촉발했던 급식은 사회서비스,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인 기초연금은 사회수당의 사례이다. 이 유형의 복지에서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할수도 있고 모든 계층에게 제공할 수도 있기에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발생한다.

사회보험

공적 복지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사회보험이다. 어떤 노동자도 질병, 실업, 산재, 은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는 이 위협에 더욱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이 불안정, 저임

금 노동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불안정할뿐만 아니라 노동재생산의 위험에도 대비책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소득이 낮아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발생하는 저임금노동자 사각지대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 가입에서 배제된 제도적 사각지대도 있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약 2/3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하다. 201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중 44.5%가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 노동자 중에서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31.7%, 고용보험은 38.9%, 직장 건강보험은 39.6%에 불과하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사회보험 복지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회보험 복지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표 2> 사회보험별 법적 사각지대 (2016년 12월 현재)

(● 표시는 해당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표시함)

근로자 범주		적용제외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근로자		●		
	시간강사, 본인희망자 기타	●	●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	●	
비상근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	●		
60세 이상인 근로자	6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			
	65세 이상 근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			
총공사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근로자				●	●
농림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4인 이하 사업체의 근로자				●	●
가사서비스업 근로자		●	●	●	●
특수형태근로자		●	●	●	▲

※ 출처: 김준(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40쪽.

이에 2012년부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14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약 절반을 각각 지원한다. 2015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절반을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는 기존 가입근로자는 40%, 신규가입근로자는 60%를 지원해 신규 가입을 독려한다. 월평균 130만원을 기준 신규가입자의 연간 지원액을 계산하면 노동자는 약 48만원, 사업주는 약 50만원이다.

그러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기준 금액이 2015년 이후 계속 140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으로 특정화돼 저임금 노동자일지라도 그 이상 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¹¹⁾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제외되기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두루누리 사업 참여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사업장 규모 요건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도 추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할 예정이다.¹²⁾

비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근로/자녀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서민금융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적복지로 비사회보험 영역의 복지가 많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확대되는 복지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무상급식, 기초연금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지위보다는 시민으로서 얻는 복지이다.

최종 사회안정만의 역할을 하는 복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 빈곤층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1만가구, 165만명이다.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 중에서 아무런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 무려 144만명에 달한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수만큼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11) 2017년 6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두루누리 사업에서 ‘10인 미만’ 규정을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수는 현행 방식의 87만명에서 28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2017), “비용추계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6~7쪽.

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4쪽.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교육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되면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수급자를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에 252만명으로 약 90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까지 3.5만 명 증가에 불과하고 임기까지 6.6만 명 증가에 그친다.¹³⁾

재산 기준의 경우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부 완화될 예정이고 주거 재산의 경우 2021년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미뤄둔 상태다. 재산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개선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도 불안정,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지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급액은 가구당 연 77만원에서 230만원인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85~250만원으로 조금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준소득금액도 여전히 1300~2500만원으로 낮아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3.6%에 불과하다(미국의 8.3%, 영국 6.9%).

자녀장려세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한 복지는 주거일 것이다. 서민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11.5%(2007)에 달하는 데 한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 5.5%(2014)에 그친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확충 목소리를 높여가야 한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겐 금융복지도 절실하다.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중이고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서민들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이 요청된다.

13) 보건복지부가 재산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2만 명 더 증가해 총 8.8만 명이라 홍보하지만, 재산 기준 완화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0월.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 시행하는 수치까지 포함하는 건 무리

[토론문]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노동복지센터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1. 지자체 노동복지센터 사업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지자체의 위탁 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자의 복지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은 권리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 권리침해 예방과 노동기본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관련 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다.

두 번째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지원” 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 사업이다.

기타 사업으로 “취업지원 사업”, “문화지원사업”, “노동자 건강 및 복지사업”이며, 상담 및 노동관련 교육 사업에 비교해서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2. 노동복지 사업 영역확대와 노동복지 상담사업 필요성

2012년 6월 개소한 이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상담과 교육,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지원을 요구하고 받기를 희망하는 상담 영역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의 남성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임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고민,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함께 고민하는 실업급여와 일자리 알선 문제, 임금체불 침해를 당한 신용불량자인 노동자가 임금수령과 자기 통장도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제 등 노동법만으로는 풀릴 수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만족할 만한 상담지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많은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충분한 조건이었던 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노원지역에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학 및 건물 청소 노동자, 택시 노동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또는 임금인상(시급)에 따라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은 곳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는 감원을 통하여 전체 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기 위하여 행해지는 기업 모습은, 지자체 센터의 기업내 중심의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만으로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근로조건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사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취약계층 노동자의 영세업체에서는 근로환경 개선의 한계가 있으니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연구하고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현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복지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심리치유(노동자 건강), 직무능력향상 교육(취업지원), 문화강좌(문화사업) 등은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노동복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의 사업영역 확대는 더욱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제안된 노동상담복지사 사업은 노동복지센터사 고민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생각된다.

3. 노원노동복지센터 사업을 하면서 느낀 노동복지 상담사 사업의 필요성

수급권자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수급 가정의 청소년이 20대가 되면서 사회진출(취업 등)을 고민함에 있어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권 때문에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를 받거나, 탈수급 문제가 있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거나, 배달알바와 같이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급 가정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10인 미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필요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4대 보험을 미가입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이 온다면, 4대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공단에 신고를 권유한다든지 가입을 하려는 이유(실업급여 수급 등)에 따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담일 것이다. 이런 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결국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국가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전단지 등을 드리면서 노동자에 동의하여 사업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다면 일부 사업주의 경우 만족하면서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급여가 인상이 되면서 노령연금이 인하되었다는 상담의 경우가 있었는데, 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준다면 급여 인하에 대하여 납득하고 좀 더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4. 권익센터의 노동상담복지사 사업에 실현에 대한 고민지점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복지사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내용을 보면 “노동복지상담 활동은 노동복지의 기본 체계와 논점을 이해하고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길잡이 역할. 즉, 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과 연계-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복지 욕구를 구현하고 후속 관계를 통해 조

직화(주체 형성)로 발전 전망을 찾고자 함.” 라고 되어 있다.

지역에서 찾아온 상담자 중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련 상담이 아닌 “직업알선 및 취업지원”, “주거관련”, “면책” 등의 상담의 경우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 하는 것과 더불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과 “상담자를 관리하는 사업” 으로 이해된다.

부당하게 해고 된 노동자가 노동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여 해고 상담과 더불어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해고문제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취업관련 지원은 타 기관과 연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연계 기관에 대하여 노동복지센터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봐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노원구에 취업지원 사업을 15곳이 넘는 기관에서 하고 있다. 기관별로 취업지원 사업 중 교육만 하거나, 취업알선을 하거나, 여성, 고령자, 장애인 지원을 하는 등 대상과 사업 내용이 다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의 주소지 별로 가장 가까운 기관에 그냥 넘기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연계 기관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센터간의 협력 체계가 있어야, 기관에서는 취업지원을 노동복지센터에서는 권리침해 예방교육과 권리구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노원지역에 있는 노원주거복지센터, 노원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울금융복지센터 도봉센터(도봉구) 등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상담자들에게 관련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안내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상대 기관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에 상담을 연계 한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관별 협약 등의 형식으로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4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노동복지 센터에서, 현재 일하는 것 외에 추가로 “노동복지 상담사 사업” 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 현실이다.

5명(노원노동복지센터)의 직원이 1년 기준으로 2,000건 이상의 노동관련 상담과 200회(강의반 기준) 이상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강좌”, “인문학강좌” “노동자 건강 강좌”, “취업지원 강좌” 등을 합하면 노동

인권 교육(200회)보다 더 많은 횟수가 된다. 여기에 다양한 캠페인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연구사업 등 사업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 너무 많고 나열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만 진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일부를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새로운 영역의 사업 추가는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복지 사업영역 확대는 고민을 해야한다. 서울권익센터에서 제안된 **“노동복지 상담사 사업”** 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사회보장 급여

위기사항에 처에 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복지급여지원 제도

신성희(성동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 1팀장)

① 긴급지원제도

□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시설입소,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28,000	728,000	943,000	1,157,000	1,585,100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 1회지원 원칙
단, 만성적 질병은지원제외(요양, 재활치료,치과, 기타착취병증,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알콜성간질환등)

□ 주거지원

- 화재 등으로 이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지역 \ 가구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2,800	635,900	83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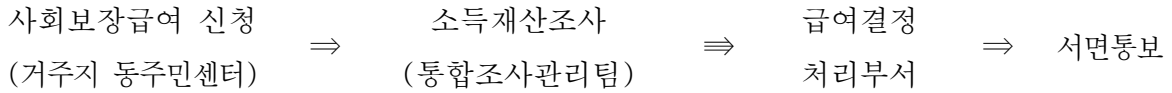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보충적 급여)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원,
 - 중증장애인(1~4급), 중증환자 가구등. 상
 - 상시근로소득자
- 조건부수급자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 중 실직 및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
- 자활사업 참여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수급권 결정

□ **사회보장 급여신청 흐름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의 원칙
- 타 급여우선원칙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맞춤형급여)수급자 급여종류**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급(4인 기준 / 315,000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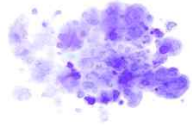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TV 수신료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전기요금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 16,0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월10,000원)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연 116,000원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 ~16,000원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 개인당 연 50,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방자치에 따라 지원

별첨)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적 용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맞춤형 급여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51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한부모가족	52%	-	1,463,513	1,893,294	2,323,037	2,752,799	3,182,561	
	청소년한부모	60%	-	1,688,669	2,184,570	2,680,428	3,176,307	3,672,186	
	긴급지원	75%	1,239,698	2,110,836	2,730,713	3,350,535	3,970,383	4,590,233	
	서울형긴급지원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기준 ①노인단독 119만원 ②노인부부 1,904천원					
				* 본재산공제 13,500만원 용재산공제2,000만원 로소득 공제60만원+나머지금액의30%					
	기준임대료	1급지	200,000	231,000	273,000	315,000	325,000	378,000	
	기준임대료 (60%)		120,000	138,600	163,800	189,000	195,000	226,80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 재산액	*5,400만원 (대도시)*환산율-주거용재산(10,000만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긴급생계급여 지급액	중위소득 15%	247,939	422,167	546,142	670,107	794,076	918,046		
정부양곡	1포 기준	20Kg:2,800원/10Kg:1,4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자동공제) 20Kg:14,000원/10Kg:7,100원(교육/차상위수급자만자동공제)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 장제급여 : 750,000원								

노동자 복지와 지역노동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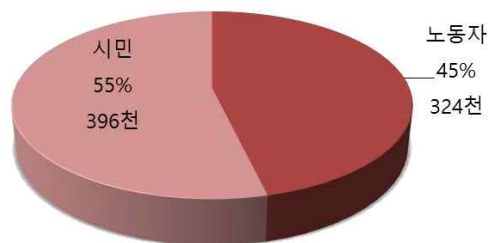
박재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안산지역 노동현실



안산시민 중 노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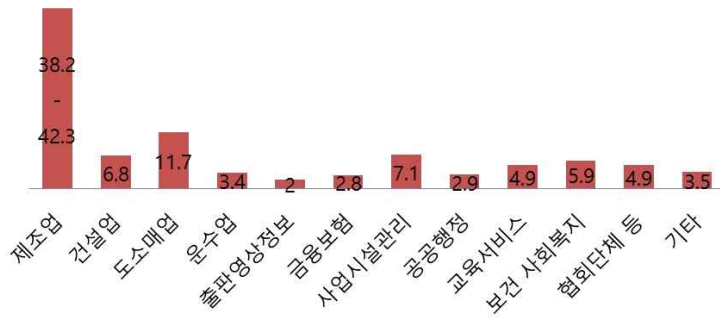
노동자 비율



안산시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2.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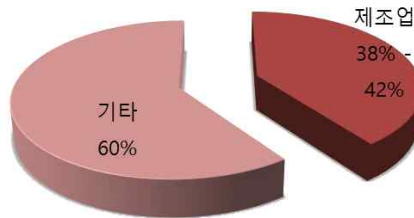
안산시 노동의 특징1 : 제조업 중심

업종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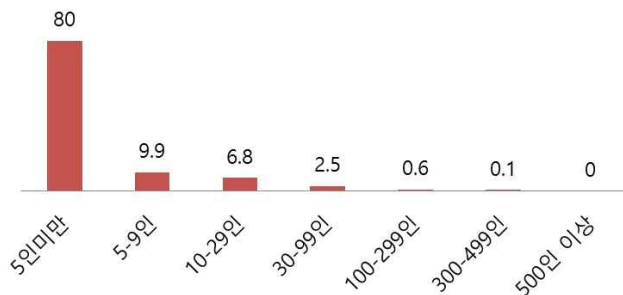
안산시 노동의 특징1 : 제조업 중심

제조업 종사자 비중



안산시 노동의 특징2 : 영세사업체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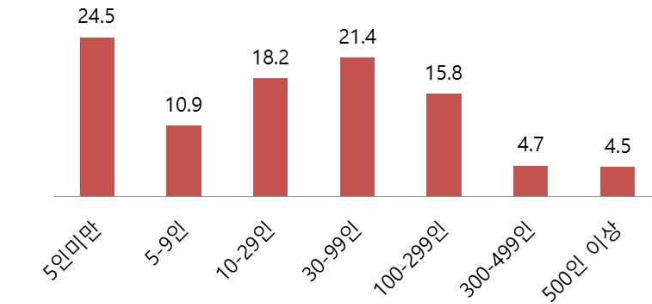
규모별 사업체 현황



* 30인 미만 사업체 : 96.7%

안산시 노동의 특징2 : 영세사업체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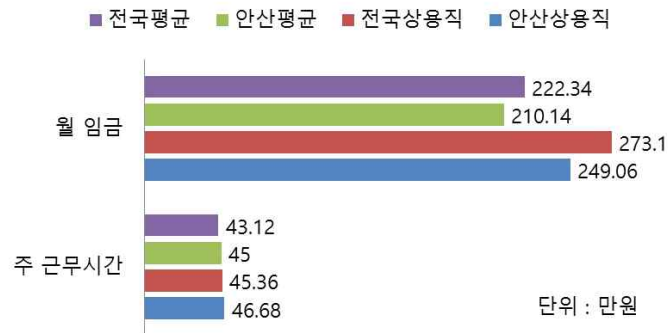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 53.6%

안산시 노동의 특징3 : 저임금 장시간노동

근무시간과 임금



안산시 노동의 특징4 : 불안정한 일자리

짧은 근속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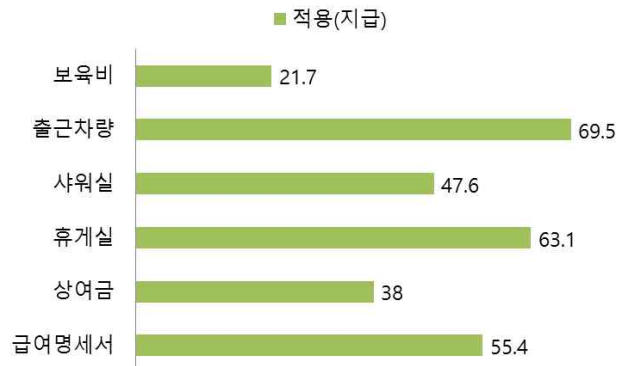


* 평균 근속연수 :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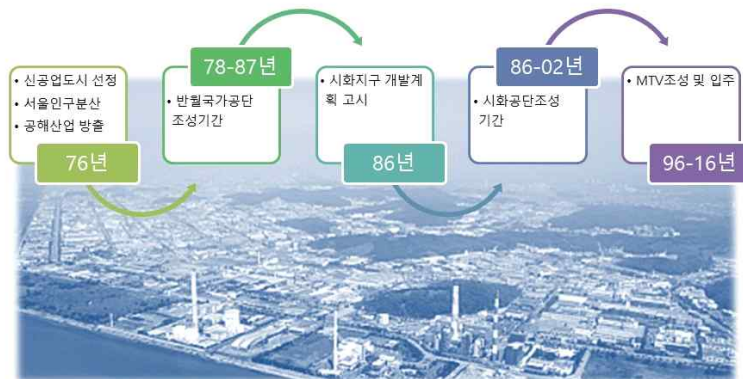
안산시 노동의 특징5 : 취약한 기본권 및 복지



안산시 노동의 특징5 : 취약한 기본권 및 복지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의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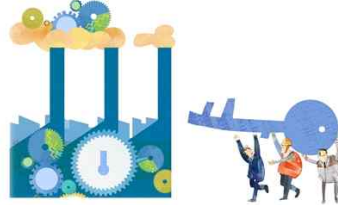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현황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는 도시 경제의 근간

- 안산시와 시흥시는 공단 조성 및 도시형성 역사를 함께하는 도시
- 안산시 사업체 종사자의 40%, 시흥시 43.7%가 제조업 종사
-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는 도시경제와 시민가계의 원천

그러나 안타까운 수치들...

- 6,470원
- 17명
- 3천 360명
- 3만명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의 특징1

국내 최대 영세기업 밀집공단

- 1만 6천여개 기업, 28만여명 노동자 근무
- 50인 미만 사업체가 98%
- 사업체당 종사자 수 : 17명
-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사내하청 전환), 공단의 임대업 허용, 파견법 등 영향

대기업에 종속된 최하위 산업

- 종속된 기술, 영세한 자본, 낮은 부가가치 기업 밀집
- 위험한 작업환경 - 높은 인건비 의존율

대응

- 정부 : 구조고도화 - 지방정부 : 구조고도화, 대기업유치

독창적인 기술, 안정적인 자본, 우수한 노동력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공단으로 변화
장기적인 산업모델연구, 국가, 지방정부의 지원과 개입으로 가능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의 특징2

기형적인 인력수급 시장

- 국내 최대의 제조업 파견시장(전국 파견노동의 16%, 3만 여명이 파견노동)
- 대다수가 제조업에 금지되어 있는 **불법파견**
- 기업의 불법적인 이윤 추구와 영세기업의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노동부의 형식적인 근로감독이 만들어낸 현실
- 고용불안, 체불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기본권 저하 원인

사내하도급으로 숨어드는 불법파견

- 최근 불법파견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이 보이자 파견의 사내하도급 전환 움직임
- 기업운영 구조가 파견이나 사내하청 등으로 사용자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추세

대응

정부 : 법제도 정비, 민관협력 불법파견 신고감시기구 운영
지방정부 : 50인미만 영세기업과 취업취약층을 연결하는
공공취업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의 특징3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전국 최저의 임금수준 : 월 207.38만원, 전국평균 227.3만원
- 다수가 최저임금 노동자
- 저임금에 따른 장시간 노동 반복

파생문제

-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피로 증가
- 산업재해 및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 증가
- 불안정한 마음건강 상태(알콜중독, 우울증 등 지수 증가)
-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어려워짐
- 시민다수가 저소득층 ...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

대응

- 정부 : 법제도 개편, 최저임금 인상
- 지방정부 : 생활임금적용 확산, 다양한 지역사회 개선책 마련
- 민간 : 지역단위 **노동자 공제회** 건설 등 생활안정을 위한 시도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의 특징4

위험한 작업환경

-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
-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보다 높은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
 - 주요 재해 경제손실액 중 가장 높은 손실액(약 18조원)

- 안산·시흥스마트허브 현실
-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0.64(전국 0.5)
 - 중대재해 발생률도 최대 수준, 연간 사망자수 38명
 - 숨겨진 산업재해를 감안하면 현실은 더 높은 수준

- 유독물 사고 위험성 : 남동, 반월, 시화, 여수, 구미
 폭발 및 화재 위험성 : 반월, 온산, 명지축산, 여수, 울산
 유독물질 저장 현황
 반월공단 56,906톤 시화공단 9,349톤
 여수공단 15,138톤

대응

- 중대재해 예방센터, 건강증진센터
- 산업재해 예방,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안산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의 특징6

낮은 노동인권지수

노동조합 조직률 2.5%

- 자본의 집체적이고 집중적인 탄압
- 노동자들의 낮은 권리의식
- 영세한 기업 구조
- 불안정한 노동시장

사회적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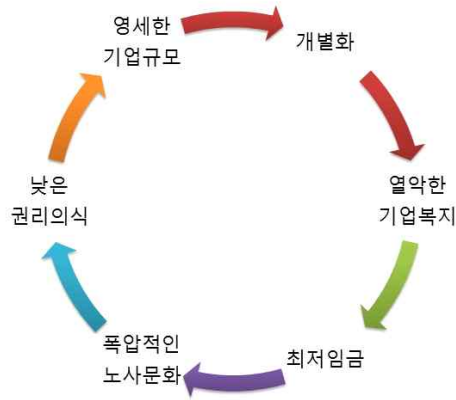
- 시민이 아닌 노동자
- 노동정책이나 지원이 전무한 사회환경
- 안산시 예산의 0.11%가 노동관련 예산

대응

- 법제도 정비, 적극적인 근로감독
- 노동인권교육
-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
-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는 노동운동의 체질 변화



안산
시흥
지역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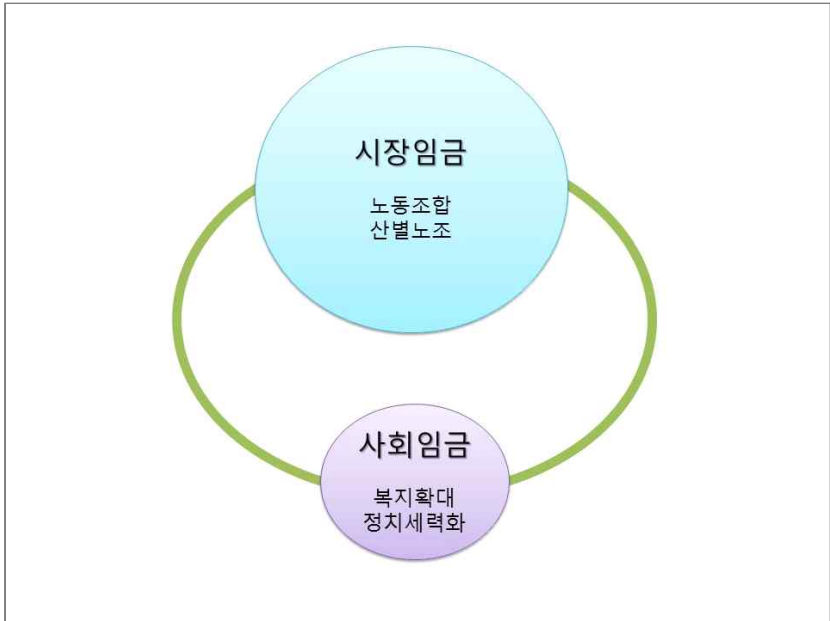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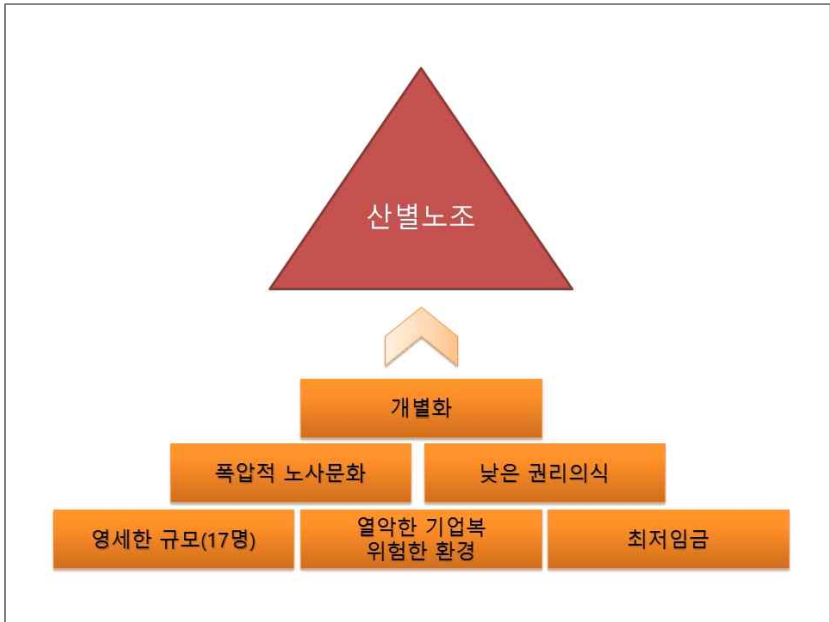


노동지옥

2.5%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

- 1회사 당 17명 노동자
- 극심한 감시와 통제 - 낮은 권리 의식 - 거세된 단결권
- 통제와 잦은 이전으로 지속적인 노동자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 사업장 중심 사업 한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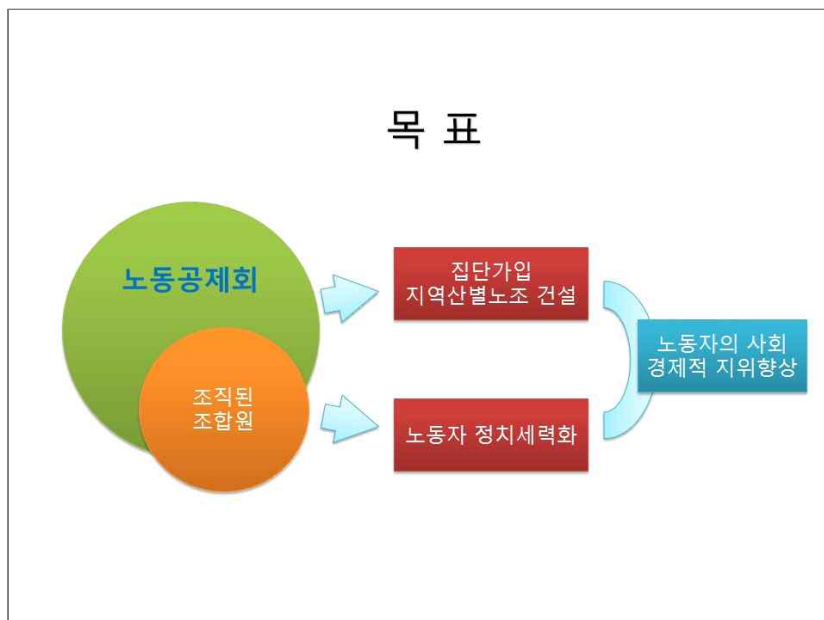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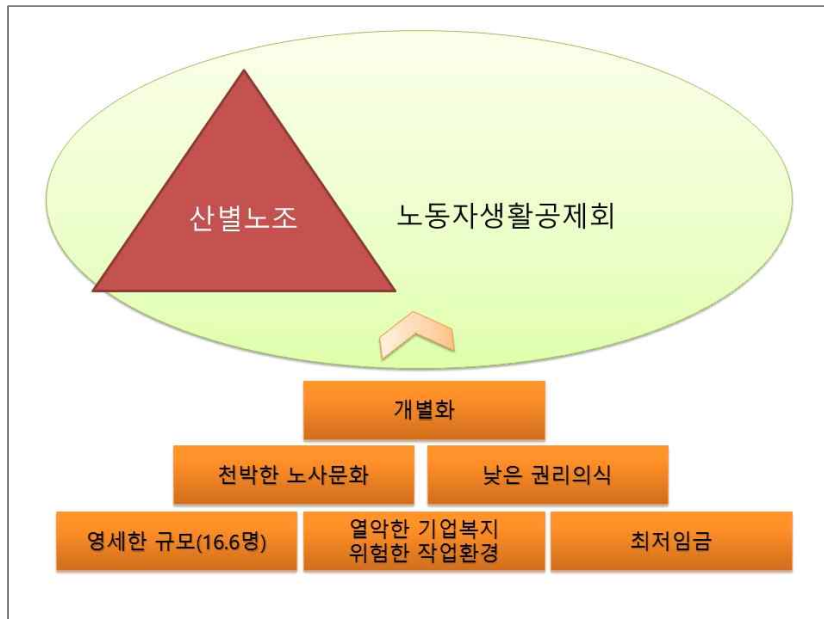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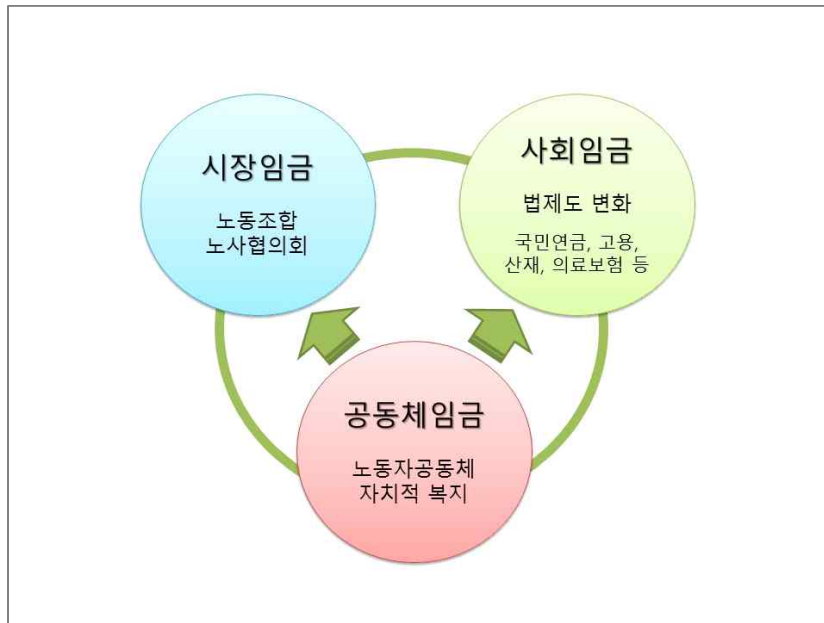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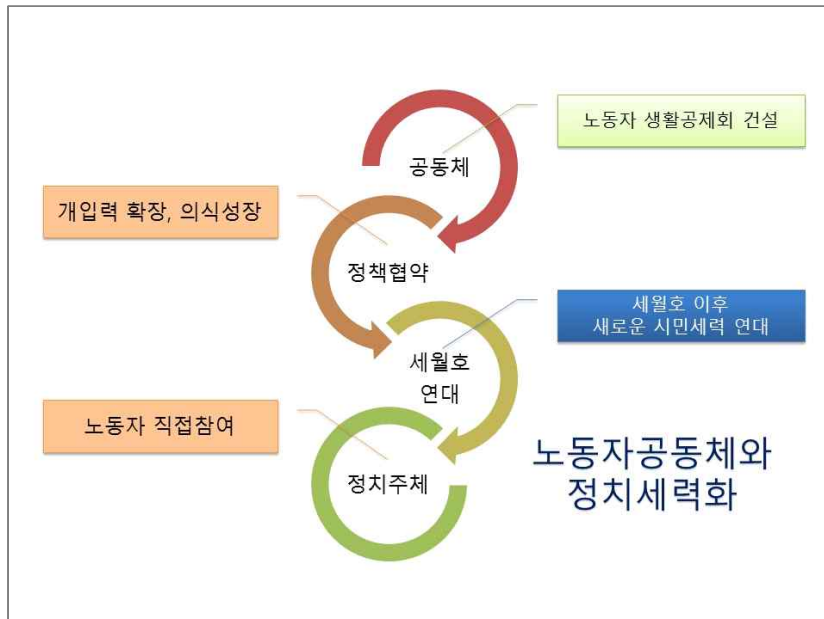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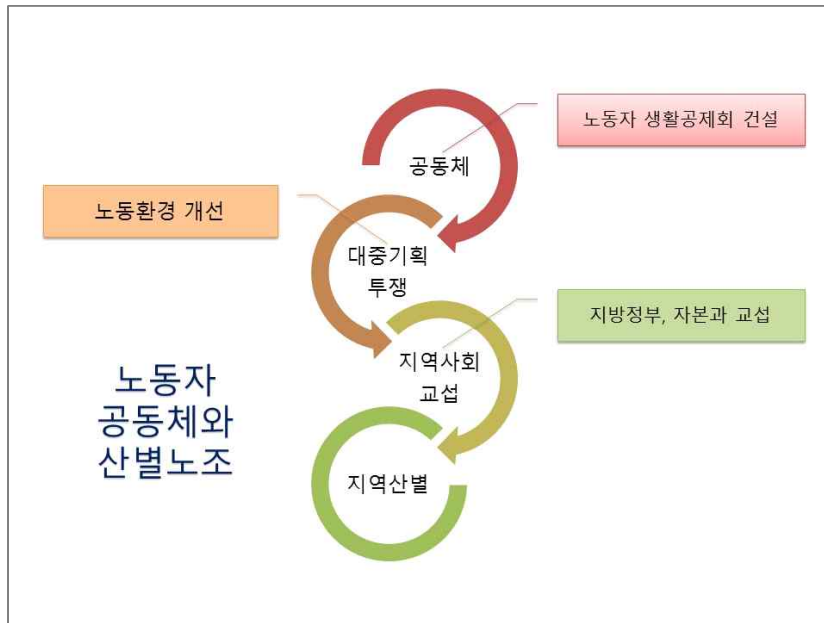
- 1가구 당 1명 이상이 공단 노동자
안산시 인구 70만, 공단에 28만명 근무
안산시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2.69
-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
- 지속적인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가능



현장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지역(동네)에서 모이고
성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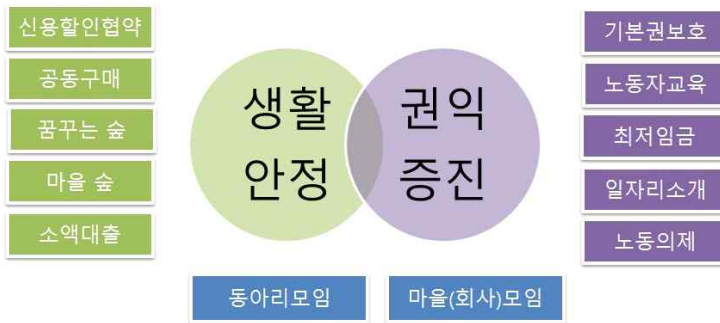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좋은이웃 설립목적



좋은이웃 현황

창립	• 2015년 3월 22일
회원	• 508가구
출자출연금	• 1억2천만원
출자금	• 5만원
회비	• 매년 최저시급
회비납부율	• 95%

좋은이웃 현황

신용협약	• 믿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 병원, 카센터 등 50여 곳 협약
꿈꾸는숲	• 회원 자녀를 위한 대안학원 초,중,고 영어, 수학, 꿈의 교실 운영
마을숲	• 작은도서관, 지역주민 모임, 회원 모임 공간
회원모임	• 마을모임 : 5개 권역별 회원모임 • 사업장모임, 봉사모임
동아리	• 여행, 영화, 도자기, 주말농장, 노동대학 • 동아리 연합회 운영

비정규센터 사업 흐름 및 집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책연구사업											
노동상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및 강사모임											
노동법률강좌						안산노동대학					
노동인권지킴이 활동											
동아리활동				한여름밤의꿈				동아리승년회			
좋은이웃 총회											

비정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지원체계



노동복지상담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확대되면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이에 지역 노동단체가 불안정·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상담 활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11월 17일(금)

○ 장소: 서울노동권익센터 9층 교육장(현장방문학습과 마무리 워크숍 장소는 미정)

회차	날짜	시간	주제
1	11/13(월)	10:00~12:00	노동복지상담의 목표와 내용
2		13:00~15:00	노동법의 기본 체계와 내용
3		15:20~17:20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이해
4	11/14(화)	10:00~12:00	사회보험의 실태와 과제: 고용보험
5		13:00~15:00	사회보험의 실태와 과제: 산재보험
6		15:20~17:20	사회보험의 실태와 과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7	11/15(수)	10:00~12:00	사회보험의 실태와 과제: 건강보험, 보건소
8		13:00~15:00	공공부조의 실태와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9		15:20~17:20	지자체 자체복지: 보육, 건강, 노인, 다자녀, 이주민, 교육
10	11/16(목)	10:00~12:00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과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11		13:00~15:00	주거복지의 실태와 과제
12		15:20~17:20	금융복지의 실태와 과제
13	별도일정(현장방문학습)		지자체복지 네트워크/간담회: 주민센터, 보건소, 금융센터, 주거센터
14	11/16(금)	10:00~12:00	실습: 사례 관리 (1차 상담, 2차 연계, 모니터링, 조직화)
15		13:00~18:00	마무리: 워크숍
		※ 마무리 워크숍은 1박2일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강사 섭외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시범사업 참가단위(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로넷 참가단체)는 사전에 교육수강생을 선정하고 교육기간에 업무조정
- ② 부분강좌 참여 신청·접수는 10월 이후에 공지 - 교육준비팀에 문의 후 접수
- ③ 수강료는 없음.
- ④ 마무리 워크숍은 1박2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논의 중임.(사업기획단 재편성 되면 확정)